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361

발의연월일: 2022. 4. 21.

발 의 자:김미애·조명희·박대수

태영호 · 최승재 · 하태경

황보승희 • 윤두현 • 백종헌

정경희 · 김선교 · 홍석준

조오섭 · 최재형 의원

(14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 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 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국내입양 절차와는 다른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 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 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의 결과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거나 양자 및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위탁하는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함(안 제3조).
-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수 있음(안 제11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국제입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31조).
-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 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 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5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의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한다.
- 2. "상거소(常居所)"란 주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기간 이 상을 거주한 장소를 말한다.
- 3.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 4. "수령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 5. "중앙당국등"이란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국제입양협약"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33조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국제입양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이하 "중앙당국"이라 한다)과 아동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

- 우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6. "국제입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이란 아동 체약국과 국제입양협약 비체약국 모두를 포함한다.
 - 가. 외국으로의 입양: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외국으로 이동하거나,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
 - 나. 국내로의 입양: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대한민국에 상 거소가 있는 자가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국내로 이동하거 나,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 국적 아동을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입양하여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하게 되는 형태의 입양
- 7. "본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적국을 말한다.
- 제3조(국제입양의 원칙) ①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 ②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 중되어야 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이 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입양을 의뢰·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이 아동의 시설 또는 가정위탁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은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민법」과의 관계) 국제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제입양협약에 의한 입양 제1절 총칙

- 제6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제입양협약 체약국 간의 입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 1. 외국으로의 입양: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자가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외국으로 이동하게 되

는 경우

- 2. 국내로의 입양: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대한민국에 상거소 가 있는 사람이 입양하여 아동이 상거소를 국내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 제7조(국제입양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협약 체약국과 이루어진 입양에 대하여 국제입양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외국으로의 입양

- 제8조(양자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입양신청 당시 아동일 것
 - 2.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하였을 것. 다만, 부부의 한쪽이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려는 경우 또는 기타 친족 간 입양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인 경우 해당 아동이 본국의 법에 따라 양 자가 될 자격을 충족할 것
- 4.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가정환경, 건 강 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의 본국의 중앙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 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소득·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4.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5. 약물중독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6. 외국인인 경우 본국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인정받았을 것
- 7.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②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 제10조(입양의 동의 등) ① 제8조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한다.
 -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제14조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양자가 될 아동의 승낙
 -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
 - ② 제8조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친생부모인 경우
-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친생부모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양 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 하여야 한다.
-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승낙, 제1항제2호에 따른 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는 제1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승낙, 제1항제2호에 따른 승낙,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서면으로 한다.
- 제11조(입양동의등의 요건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의·승낙 및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입양동의등"이라 한다)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입양동의 등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 승낙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 는 사항 및 입양동의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 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제10조의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에게 입양동의 등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입양 신청 등) ① 이 절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제입양협약 제14조에 따라 수령국 중앙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협약 제15조제2호에 따라 수령국 중 앙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

지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중앙당국 간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아동에 관한 보고서를 수령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국 중 앙당국에 대하여 입양절차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아동에게 국내입양이 가능해진 경우
 - 2. 양자가 될 아동이나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거 부 의사를 밝힌 경우
 -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입 양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31조에 따른 국제입양기관의 장은 가정법원에 입양의 허가를 신 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고서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
-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의·승낙 서면 및 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
- 5.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서류
- ③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입양의 효력발생)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6조(아동의 인도) ①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법원의 입 양허가 결정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한다. 다만, 양부모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려는 경우 또는 기타 친족

간 입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의 인도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국내로의 입양

- 제17조(양자가 될 자격)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출신국 중앙 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 제18조(양부모가 될 자격) 양부모가 될 자격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입양 신청 등)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이 절에 따라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20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입양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 가정환경 조사,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

- 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본국 중앙당국에 신청자 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및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입양절차 진행의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협약 제1 6조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의 보고서를 수령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입양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 1.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 2. 양자가 될 아동이나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 3. 양자가 될 아동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4.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22조(입양의 성립) ① 이 절에 따른 국내로의 입양은 출신국 중앙당

국의 승인으로 성립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법원의 허가 등 입양 성립을 위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양 성립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장 국제입양협약에 따르지 않는 국제입양 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

-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에 적용된다.
 - 1. 국제입양협약 가입국이 아닌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대한 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 제24조(입양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준용규정) ① 양자가 될 자격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③ 입양의 승낙 및 동의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 ④ 입양절차에 관련하여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 ⑤ 가정법원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⑥ 입양의 성립 및 아동의 인도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절 국내로의 입양

- 제25조(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에 적용된다.
 - 1.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국제입양협약 가입국이 아닌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 2.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 국적의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 제26조(입양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준용규정) ① 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②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 ③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고, 제2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 항, 제13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 ④ 입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이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양의 취소 및 파양

- 제27조(입양의 효력) 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성립된 입양은 가정법원 하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 상 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의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출신국에서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출신국 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입양의 취소 및 취소된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입양아동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아동 또는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친생부모·양부모·입양아동이 거주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수령국 중앙 당국등과 협력하여 해당 아동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

- 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출신국 중앙당 국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9조(파양 및 파양에 따른 보호조치) ① 양부모, 양자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 을 청구할 수 있다.
 -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2.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수령국에서 파양된 경우에 수령국 중앙당국 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아동이 파양된 경우에 출신국 중앙당국 등에 그 취지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중앙당국과 국제입양기관

- 제31조(국제입양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제입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른 입양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제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양부모가 될 자에 대한 입양제도 및 절차 설명 등 서비스 제공
 - 2. 본국의 공인을 받은 외국 입양기관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③ 국제입양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또는 협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제입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⑤ 국제입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지정 기간이 지난 후 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국제입양 기록의 보존 및 이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국제입양기관의 장,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 설의 장은 국제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 형태의 기록 을 포함한다)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이하 "국제입양기록"이라 한다)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③ 국제입양기관의 장,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휴업 예정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양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기록의 범위 및 내용, 제2항에 따른 국제입양기록의 제공 및 영구보존, 제3항에 따른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제34조(외국으로의 입양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수령국 중앙당국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1.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2.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에 필요한 서비스
 -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 4. 입양아동의 적응 및 건전한 성장 여부 등에 대한 적응보고서의 작성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이 양부모 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5조(국내로의 입양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 등과 협력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외에 출신국 또는 아동의 본국 중앙당국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 등과 협의하여 요청에 응할 수 있다.
 - ③ 이 절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36조(사후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된 아동 및 입양 가정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위기지원 및 정착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제6호가목에 따라 입양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위기 지원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 2. 취업 교육 및 취업 기회의 제공
- 3.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지원
- 4. 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지원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서비스 사업 제38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 권리보장원, 입양기관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제39조(외국과의 협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 앙당국등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제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 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 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입양 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4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입양기

관에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임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민법」 및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 국제입양 및 양자될 아동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벌칙

-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입양을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의 수단으로 악용한 자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 또는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 3. 제14조(제2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또는 제22조(제2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신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입양 업무를 행한 자
- ②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입양을 의뢰·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0조제2항(제2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 또는 「입

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이 있었던 아동의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제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입양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